

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번호	제 82 호
의결년월일	98. 12 21 (제67회)

발의년월일 : 1998. 12. 9

발 의 자 : 김덕균 의원 외 29인

1. 주 문

- 지방자치체의 완전정착 단계의 시대를 맞아하고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부응코자 기이
재정된 각종 조례에 대한 내용을 심층 검토 심사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든가 불편 부당
하며 목적달성이나 실효성 없는 조례를 발췌하여 이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
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로 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
위함.

2. 제안이유

-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 숙원,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례의 현실성 있는 개정
- 각 위원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후 조례정비
-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에 의회의 능동적 대처

3. 관련법규

-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

4. 참고사항

- 구성인원 : 9명(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)
- 활동기간 : 1999. 1. 4~1999. 6. 30(6개월 간)